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11 발의연월일: 2024. 7. 30.

발 의 자:서영석·조 국·이언주

이성윤 · 김한규 · 박희승

문진석 • 한준호 • 김재원

이건태 • 이용선 • 이정문

이해식 · 김태년 · 민병덕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요양하는 기간 동안은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이유로 발생한부상·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상병으로 장기 입원하거나 장해가 발생하면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공적인 보장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업무 외의 사유로 상병을 입은 근로자들이 실직을 우려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직장에 복귀하게 됨에 따라 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의 병가를 법률로 허용하여 실직의 우려 없이 상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 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2 조의2 신설,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6조제2항제2호).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2조의2에 따른 병가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2조의2(병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을 이유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가(이하 "병가"라 한다)를 청구한 때에는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병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의 병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인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병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병가 기간 동안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 ④ 사용자는 이 법에 따라 병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청구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제1항 중 "제56조"를 "제56조, 제62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10조제1호 중 "제5항,"을 "제5항, 제6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48조"를 "제48조, 제62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아 혂 행 개 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62조의2에 따른 병가 5.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의2(병가) ① 사용자는 근 <신 설> 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을 이유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 가(이하 "병가"라 한다)를 청구 한 때에는 연간 30일의 범위에 서 병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병가 기간은 유급 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병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인금의 10 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 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 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109조(벌칙) ①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 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u>제5</u> 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 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
<u>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u>
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u>있다.</u>
③ 사용자는 병가를 이유로 근
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
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병가 기간 동안 그 근로자를 해
고하지 못한다.
④ 사용자는 이 법에 따라 병가
를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
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청구방

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u>제56</u>
조, 제62조의2제3항,	
② (현행과 같음)	
세110조(벌칙)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1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	
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	
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4항 및 <u>제5항,</u> 제64조제1항,	<u>제5항,</u> 제62조의2제2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u>하,</u>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	
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6조(과태료) ① (생 략)	제11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	 1. (현행과 같음) 2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 조, <u>제48조</u> , 제66조, 제74조제7	 1. (현행과 같음) 2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 조, <u>제48조</u> , 제66조, 제74조제7 항·제9항, 제76조의3제2항·	 1. (현행과 같음) 2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 조, <u>제48조</u> , 제66조, 제74조제7 항 · 제9항, 제76조의3제2항 · 제4항 · 제5항 · 제7항, 제91조,	 1. (현행과 같음) 2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